

보 상 계 획 공 고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상 주 시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 나. 사업위치 :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산11-87 일원
- 다. 사업면적 : 148,130㎡
- 라.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마. 사업시행자 : 상주시장(상주시 상산로 223)

2. 보상대상

- 가. 토 지 :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산11-87 일원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0. 07. 10. ~ 07. 24.(15일간)
- 나. 열람장소 : 상주시청 관광진흥과(본관3층)
- 다. 이의신청 : 보상물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주시청 관광진흥과, ☎054-537-7114)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0년 8월 이후(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체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라.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주시청 관광진흥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관광진흥과(☎054-537-7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